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4월 5일

나. 발 의 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 구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안 제4조~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안 제6조~제7조)
- 위원장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우리구 환경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15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및 소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 제2조에서는 우리구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환경위원회 위원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며
 -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 이후 빠른 고속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다양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전 문제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

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전문가, 환경 활동가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환경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본 조례안은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동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0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5일

발의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구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운영 규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다.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위원장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제15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4. 5. ~ 4. 1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환경국장, 환경과장, 치수과장, 청소과장, 푸른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행정팀장이 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